####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58 발의연월일: 2024. 9. 6.

발 의 자:김남희·박홍근·박정현

이기헌 · 염태영 · 송재봉

오세희 · 김문수 · 김남근

박 정ㆍ이용선ㆍ박주민

서영교 · 이원택 · 황정아

김용만 · 임광현 의원

(17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,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·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처 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.

####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제1조(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」의 개정)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8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2조(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제3조(「아이돌봄 지원법」의 개정)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.

제4조(「청소년 기본법」의 개정)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5조(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의 개정)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호를 삭제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##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긴급전화센터, 상담소	제8조의2(긴급전화센터, 상담소
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	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
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준) ①
나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전화	
센터의 장, 상담소의 장, 보호	
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	
전화센터・상담소 및 보호시설	
종사자가 될 수 없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	<u>&lt;삭 제&gt;</u>
권(復權)되지 아니한 자	
3. • 4. (생 략)	3. • 4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
##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	제6조(결격사유)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	
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	
에 종사할 수 없다.	
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	1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
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	는 피한정후견인
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
# 아이돌봄 지원법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	제6조(결격사유)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	
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	<u>&lt;삭 제&gt;</u>
아니한 사람	
5. ~ 9. (생 략)	5. ~ 9. (현행과 같음)

# 청소년 기본법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청소년지도사) ① ~ ③	제21조(청소년지도사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4
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	
가 될 수 없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	<u>&lt;삭 제&gt;</u>
아니한 사람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## 청소년활동 진흥법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15조(결격사유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	
수련시설의 대표자(법인의 경	
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) 또는	
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	<u>&lt;삭 제&gt;</u>
아니한 사람	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